낚시어선업 안전운항을 위한 준수사항

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(안전운항등을 위한 조치)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 운항과 위해방지 기타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하였으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. 낚시어선업자는 갯바위등 위험소지가 있는 낚시장소에 낚시객을 안내할때는 낚시객과 상호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급작스런 기상악화등 상황 발생시 낚시객을 안전하게 대피 조치하여야 한다.
- 2.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낚시객(승객)을 승선시킬 경우 낚시객이 준수 할 다음 사항을 교육시킨 후 운항하여야 하며, 승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가. 낚시객은 낚시어선 운항 등에 있어 낚시어선업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.
- 나. 낚시객은 갯바위등 낚시장소에서 낚시도중 기상악화시 낚시어선업자가 안전 대피를 위하여 승선토록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.
- 다. 만약, 낚시객이 낚시어선업자의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낚시 어선업자는 인근 해양경찰서에 인명대피 요청 신고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3. 낚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갯바위등 위험지역중 영업을 제한한 구역에 대하여는 안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4. **낚시어선에는 승선정원 · 낚시어선업 신고 확인증 및 이용승객 준수사항을 게시** 하여야 하며, **승선자 와 낚시객(승객)전원은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**하여야 한다. ⇒ 위반시 : 과태료 100만원
- 5. 낚시어선 영업 제한시간(출입항시간)

하절기(4월~10월)는 22:00~02:00시까지, 동절기(11월~익년3월)는 22:00~03:00시까지로 한다. ※ 단, 레이더 등 야간 항해장비가 설치된 낚시어선은 선박검사증서상 항해시간을 적용한다.

- 6. 술에 취한상태 및 약물(마약)복용 상태에서의 조종을 금지한다.
- 7.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서에 신고 해야 한다.
- 8. 해상에 유류(油類)・분뇨・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다.
- 9. 운항횟수 제한 : 운항횟수는 제한하지 않음

위 사항을 위반 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 및 타 법령에 의하여 제제를 받게 됩니다.